

보도시점 (지 면) 4.29.(월) 조간
(인터넷) 4.28.(일) 12:00

물을 거의 안쓰는데도 일반공장보다 3배나 되는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구요?

- 사업화 단계부터 성장, 폐업 및 재기 단계별 규제애로 71건 개선 추진
- 기준 자체가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에서 관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화 촉진
- 과도한 환경·인증규제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6일(금),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년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킨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화장지의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해서 기업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례이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 성능 품질인증이 작년 3월부터 의무화되었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하여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되었다. 이를 개선하여 이번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 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하다. 어획 증명서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출업체는 수출단계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수산물의 조업선이 불법어업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는 어획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셋째,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박순홍 (044-204-7350)
		담당자	사무관	정충준 (044-204-7359)



1 사업화를 막는 디딤돌 규제개선

1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 허용 국토부

■ **(현행)**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등화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서 로고램프 설치 불가

* **(로고램프)** 차폭등·후미등과 다른 별도 등화로써, 자동차 전·후방에 설치된 자동차 제작사 로고(상표)에 램프를 설치하는 등화장치

⇒ **해외사례** : 미국·유럽에서는 설치가능하며, 최근 후미등, 차폭등과 연동하여 작동되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23.3)

■ **(개선)** 국제기준에 맞춰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하여 차폭등·후미등 점등시 이에 연동하여 점등할 수 있는 로고램프 설치 허용

☞ 국토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4.12)

2 세포배양식품 생산을 위한 동물의 세포채취 가이드라인 마련 농식품부

■ **(현행)** 살아있는 동물에서 세포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여 실험시행기관의 자체적인 동물실험윤리위 심의를 거쳐 시행가능하나, 산업 활성화와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개선)** 실증을 바탕으로 세포 채취하는 방식, 해당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채취 가이드라인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 세포배양식품 관련 세포채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실증 추진(25.1)

3 천연 계면활성제를 활용한 주방용 세제 환경인증 기준 마련 환경부

■ **(현행)** 콩, 코코넛 등 천연 계면활성제를 활용한 세제는 기존 화학적 시험절차로는 제품성능 측정이 불가능*하여 사업화 애로

* 현재는 일정량의 물에 세제를 녹여서 발생하는 거품의 양에 따라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나, 천연 계면활성제는 성분 차이 등으로 인해 세탁시 거품이 미발생

■ **(개선)**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천연 계면활성제를 활용한 주방용 세제에 대한 시험 방법 개선 및 인증기준 개정

☞ 환경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25.12)

2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춧돌 규제 완화

1 길이·넓이에 따라 추가되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 기준 합리화 환경부

■ **(현행)** 두루마리형 화장지 원지(原紙)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더라도, 치수(길이, 너비)가 다른 경우, 제품 특성이 동일하더라도 재심사* 필요

* 환경표지 인증시 화장지 길이·너비에 따라 품질 기준 재심사 필요

■ **(개선)** 기 인증제품과 치수(길이, 너비)만 다른 동일 모델의 경우 통합인증이 가능하도록 KS 기준 준용 등 품질 기준을 개정

☞ **환경부 / 환경표지 대상제품(EL321)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24.12)**

2 같은 공정이라도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어린이제품 KC인증 기준 합리화 산업부

■ **(현행)**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인증 시, 제품원료·제조공정이 동일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세부 분류별로 추가적 KC 인증을 요구

* 유아용 제품의 경우, 성인과 달리 외의류·중의류 같은 구별이 힘든 경우가 많음

■ **(개선)**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상 세부분류*를 단순화(10종 → 6종)하고, 실증을 바탕으로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시험항목 추가 정비

* (기존) 외의류, 중의류, 내의류 등 10종 → (개선) 의복류 등 6종 세부분류로 통합

☞ **산업부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24.3)**

3 공공기관 CCTV 보안성능 품질인증 의무 완화 국정원

■ **(현행)**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CCTV 납품시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의무화('23.3)되었으나, 유일한 보안성능 품질인증 심사기관의 심사지연*으로 CCTV 업계 부담 가중

* 인증 비용은 약 600만~1000만원이며 인증 신청시 약 6개월~1년 소요

■ **(개선)** 검사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없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 허용

* (보안성능 품질인증) 약 100여개 검사항목 → (보안기능 확인서) 약 40여개 검사항목

☞ **국정원 /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 공공·분야 공통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제정('24.4)**

④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개정 환경부

■ **(현행)**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이 있더라도, 일반 공장(5L/m²)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해 부담 가중

■ **(개선)**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 공장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5L/m²)을 적용

☞ **환경부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 개정(24.6)**

⑤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국토부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시 경미한 사업변경의 경우에도 처음과 동일한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여, 사업추진 지연 등 애로 발생

* (개발제한구역 내 사전절차) 주민의견 청취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개선)** 경미한 사업 변경은 도시계획위 심의 생략 등 사전절차 간소화

☞ **국토부 / 개발제한구역법 개정(24.12)**

⑥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업종 확대 중기부

■ **(현행)**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은 소상공인으로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님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

■ **(개선)**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24.7)**

⑦ 수산물 어획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해수부

■ **(현행)** 유럽공동체(EU)에 수산물 수출 시,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어획증명서*가 필요

*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 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발급

-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후 수출단계에서 어획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조업선의 불법어업 행정처분 이력 때문에 어획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여 피해 발생

■ **(개선)**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에도 조업선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허용

☞ **해양수산부 /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24.7)**

3 또다른 시작을 위한 이음돌 규제 완화

①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의 소상공인 폐업 신고기한 연장 문체부·고용부

■ **(현행)**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은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일반적인 업종과 달리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여 부담

*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노래연습장업, 게임 관련 사업, 출판업, 인쇄업 등 총 7종

■ **(개선)** 폐업신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소상공인 부담 완화

☞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 직업안정법 개정('24.12), 음악산업진흥법 및 게임산업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24.12)

② 통신판매업 폐업 등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공정위

■ **(현행)** 통신판매업 폐업 혹은 변경신고(대표자·상호 등)시 사업신고증이 필요해,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받아야만 신고 가능

■ **(개선)**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변경신고시, 신고증 분실·훼손 사유만 작성하면 기존 신고증이 없어도 폐업 또는 변경신고 허용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23.12)

참고2

규제개선 과제(71건)

연번	과제명	소관 부처	조치 사항
1. 사업화를 막는 디딤돌 규제개선			
1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 허용	국토 교통부	규칙 개정 (‘24.12)
2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24.6)
3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근거 및 주행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경찰청	법 개정 (‘25.6)
4	초급속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 출력용량 확대	산업통상 자원부	시행규칙 개정(‘24.12)
5	혁신의료기술평가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既조치)
6	게임물관리 위원회 등급 분류 기준 조정	문화체육 관광부	규정 개정 (‘24.12)
7	이차전지를 활용한 디지털 도어록 안전인증 기준 마련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개정 (‘24.12)
8	초소형자동차의 주행도로 확대	경찰청	시행령 개정 (‘25.6)
9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특수자동차 분류 신설	국토 교통부	시행규칙 개정(既조치)
10	세포배양식품 관련 동물의 세포채취 가이드라인 마련	농림축산 식품부	실증 추진 (‘25.1)
11	분산형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 안전처· 보건복지부	시스템 구축 (‘25.12)
12	천연 계면활성제를 활용한 주방용 세제 환경인증 기준 마련	환경부	시행령 개정 (‘25.12)
13	자율주행차 주행 시 안면 정보에 대한 AI 학습 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 마련(既조치)
14	세포배양 식품원료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개정 (既조치)
15	인공지능 및 디지털 치료제 수가체계 신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마련(既조치)
16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준 마련	산업통상 자원부	인증기준 마련(‘24.6)
17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 제정 (既조치)
18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안전검사 통합기준 제정	산업통상 자원부	가이드라인 제정(‘25.6)
19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식품의약품 안전처	예규 개정 (既조치)
20	액화수소 안전밸브 검사시설 설치부담 완화	산업통상 자원부	가이드라인 마련(既조치)
2.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춧돌 규제 완화			
21	길이·넓이에 따라 추가되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 기준 합리화	환경부	고시 개정 (‘24.12)

연번	과제명	소관 부처	조치 사항
22	같은 공정이라도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어린이제품 KC 인증 기준 완화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개정 (‘24.3)
23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전기용품 인증기관 확대	산업통상 자원부	시행령 개정 (‘24.6)
24	공공기관 CCTV 보안성능 품질인증 의무 완화	국가 정보원	지침 제정 (‘24.4)
25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 검사기관 추가	산업통상 자원부	시행규칙 개정(‘24.6)
26	고효율 에너지 인증 관련 수수료 부담 완화	산업통상 자원부	운영규정 개정(既조치)
27	내연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전환 튜닝 허용	국토 교통부	고시 개정 (‘24.12)
28	유사 법정인증 보유기업 현장실태조사 생략	중소벤처 기업부	고시 개정 (‘24.6)
29	중소기업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 완화	중소벤처 기업부	법 개정 (既조치)
30	문구제품에 대한 환경표시 인증규제 완화	환경부	고시 개정 (既조치)
31	중소기업간경쟁 신제품 지정요건 완화	중소벤처 기업부	고시 개정 (既조치)
32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개정	환경부	고시 개정 (‘24.6)
33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국토 교통부	법 개정 (‘24.12)
34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건설업 등록 의무 개선	산업통상 자원부	시행규칙 개정(既조치)
35	중소기업 지원사업 실적 산정시 이차보전 대출금 제외	중소벤처 기업부	공고 반영 (既조치)
36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既조치)
37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및 신고절차 간소화	환경부	시스템 개편 (既조치)
38	공공조달 단가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부담 완화	조달청	지침 개정 (既조치)
39	후출원 상표 등록 요건 완화	특허청	법 개정 (既조치)
40	중소기업 서비스 수출 품목 인정 범위 확대	산업통상 자원부	법 개정 (既조치)
41	산업단지 내 OEM 생산제품 판매 허용	산업통상 자원부	시행규칙 개정(既조치)
42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환경부	시행령 개정 (既조치)
4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간소화	환경부	법 개정 (既조치)
44	갱내 유해가스 농도측정 방식 변경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개정 (‘24.6)
45	수산물 어획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해양수산부	예규 개정 (‘24.7)
46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업종 확대	중소벤처 기업부	시행령 개정 (‘24.7)
47	수제맥주 제조 허용 품목 확대	기획 재정부	시행령 개정 (既조치)

연번	과제명	소관 부처	조치 사항
48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및 주유시간 제한 완화	소방청	시행규칙 개정('24.6)
49	1인 창조기업 인정 대상 업종제한 완화	중소벤처 기업부	법 개정 ('25.6)
50	캠핑카에 기준판매비율에 따른 개별소비세 적용	국세청	고시 개정 (既조치)
51	지방세 통보 방식 개선	행정 안전부	시스템 개시 (既조치)
5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고용 노동부	고시 개정 (既조치)
53	온라인 주문 후 차량에서 픽업하는 스마트 주류 구매 서비스 허용	국세청	유권해석 (既조치)
54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중소벤처 기업부	법 개정 (既조치)
55	유지·보수만 하는 의료기기 구성품의 자료 제출 의무 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개정 (既조치)
56	유료직업 소개사업소 사무실 면적요건 제외	고용 노동부	시행령 개정 ('24.12)
57	소진공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가능 기관 편입	법무부	법 개정 (既조치)
58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면제범위 확대	국토 교통부	시행규칙 개정('24.12)
3. 또다른 시작을 위한 이음돌 규제 완화			
59	폐업 후 동종업종 재창업시 창업 인정 요건 완화	중소벤처 기업부	시행령 개정 ('24.8)
60	가업승계 업종변경 세제지원 제한 기준 합리화	기획 재정부	시행령 개정 (既조치)
61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 사업 신청요건 완화	중소벤처 기업부	사업 공고 (既조치)
62	법인전환 기업에 품목별 원산지 인증 승계 허용	관세청	고시 개정 (既조치)
63	노란우산공제 공제 항목 확대	중소벤처 기업부	시행령 개정 ('24.6)
64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폐업 신고 기한 연장	고용 노동부	법 개정 ('24.12)
65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 신고 기한 연장	고용 노동부	법 개정 ('24.12)
66	국내외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기한 연장	고용 노동부	법 개정 ('24.12)
67	음악 관련 사업 폐업신고 기한 연장	문화체육 관광부	법 개정 ('24.12)
68	게임 관련 사업 폐업신고 기한 연장	문화체육 관광부	법 개정 ('24.12)
69	출판사업자 폐업신고 기한 연장	문화체육 관광부	법 개정 ('24.12)
70	인쇄사업자 폐업신고 기한 연장	문화체육 관광부	법 개정 ('24.12)
71	통신판매업 폐업 등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 위원회	시행규칙 개정(既조치)

□ 설치 및 구성

-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 당연직(8)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능(법 제24조)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역할

- (신설·강화규제 심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시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 심사 의무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심사 요청시 10일 이내 중요규제 여부 결정 및 45일 이내 규제 철회 또는 개선 권고 등 심사 완료(법 제11~14조)
- (기존규제 점검·정비) 규제정비종합계획 부처별 이행점검,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기존규제 정비 등 추진